

의안번호 제 32 호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윌일	2017. 5. 23.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호 제 32 호 제출연월일: 2017. 5. 23.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회계]

-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 취득
 - · 벌곡면 조동리 113번지 외 14필지 84,316㎡(토지), 9,247.04㎡(건물) 취득
- O 소나무 노을섬 일원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 · 부적면 신풍리 747번지 외 6필지 7,363m²(토지) 취득
- O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 · 가야곡면 조정리 541-2번지 외 8필지 25.348㎡(토지), 219㎡(건물)
- O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취득(신축)
 - · 관촉동 342번지 1,207㎡(시설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O 하수처리장 부지 매각
 - · 광석면 오강리 419-1번지 2,247m²(토지)

3.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총 괄(일반회계+농공단지 특별회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 E	-1		<u>당초(</u>	<u>4)</u>		<u>변경(A</u> -	+ <u>C)</u>		<u> 증</u> 감((<u>:)</u>
	구 분	Ē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토지	24	22,929	1,111,560	55	139,956	10,388,986	31	117,027	9,277,426
	계	건물	9	585.41	343,465	17	10,051.45	1,840,885	8	9,466.04	1,497,420
		기타	1	1,200	8,600,000	2	2,407	10,000,000	1	1,207	1,400,000
		토지	18	1,856	764,350	49	118,883	10,041,776	31	117,027	9,277,426
 취	1.매입	건물	9	585.41	343,465	17	10,051.45	1,840,885	8	9,466.04	1,497,420
''		기타	1	1,200	8,600,000	2	2,407	10,000,000	1	1,207	1,400,000
득	2.교환 으로	토지 건물	6	21,073	347,210	6	21,073	347,210	-	-	-
	취득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1	7,512	346,303	2	9,759	403,601	1	2,247	57,298
처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1	2,247	57,298	1	2,247	57,298
분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7,512	346,303	1	7,512	346,303	-	-	_
	l용 및 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가-1. 일반회계

○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 .	-1		<u>당초(<i>F</i></u>	<u>(</u>		<u>변경(A</u> -	+ <u>C)</u>		<u> 증</u> 감((<u>C)</u>
	구 분	<u> </u>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토지	24	22,929	1,111,560	55	139,956	10,388,986	31	117,027	9,277,426
	계	건물	9	585.41	343,465	17	10,051.45	1,840,885	8	9,466.04	1,497,420
		기타	1	1,200	8,600,000	2	2,407	10,000,000	1	1,207	1,400,000
		토지	18	1,856	764,350	49	118,883	10,041,776	31	117,027	9,277,426
 취	1.매입	건물	9	585.41	343,465	17	10,051.45	1,840,885	8	9,466.04	1,497,420
''		기타	1	1,200	8,600,000	2	2,407	10,000,000	1	1,207	1,400,000
_	2.교환	토지	6	21,073	347,210	6	21,073	347,210			
득	으로	건물									
	취득	기타									
	3.기타	토지									
	3.기다 취득	건물									
	11-1	기타									
		토지	1	7,512	346,303	1	7,512	346,303			
	계	건물									
		기타									
		토지									
 처	4.매각	건물									
'		기타									
 		토지									
분	5.양여										
		기타									
	6.교환	토지	1	7,512	346,303	1	7,512	346,303			
	으로	건물									
	처분	기타									
,,	ΔD	토지									
	·용 및 부허가	건물									
		기타									

가-2. 농공단지 특별회계

○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	H		<u>당초(</u>	١)		변경(A	+ <u>C)</u>		<u> 증</u> 감(C	<u>.)</u>
	구 분 토지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계	토지 건물 기타									
취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바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분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용 및 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가-3.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	н		<u>당초(<i>F</i></u>	4)		변경(A	+C)		<u>증</u> 감(C)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계	토지 건물 기타									
취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득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1	2,247	57,298	1	2,247	57,298
처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1	2,247	57,298	1	2,247	57,298
분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용 및 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소 재 지	수량	가감정 가 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 =	사업별개요참조	- 0				

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m²,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가감정	처분	처분사유	비고
번호	구분	소 재 지	수량	가 격	시기	시판설표	비ㅗ
		사업별개요참조					

라. 사업별 개요

○ 일반회계

1)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폐교부지 및 건물 취득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O 취득위치 : 벌곡면 조동리 113외 14필지

○ 취득면적 : 93,563.04m²(토지 84,316 건물 9,247.04)

○ 사업비: 6,280,743천원<시비100%>

O 사업내용 : 아이들의 꿈과 추억을 머금은 폐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문화·캠핑 등 각종 체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 취득재산 대상내역 : 토지 및 건물 (일반)

(단위 : m², 천원)

토지소재지	구 분	전체면적	가감정 가격	비고
합 계		93,563.04	6,280,743	
버고머 フ두리 110 이 14미기	토지	84,316	4,903,322	
발곡면 조동리 113 외 14필지 	건물	9,247.04	1,377,421	

■ 취득 대상 재산내역 : 토지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구 분	면적	가감정 가격	비고
	계	15필지			84,316	4,903,322	
1	벌곡면 조동리	113	학교용지	토지	9,840	639,600	벌곡 조동분교장
2	가야곡면 산노리	508-4	학교용지	토지	20,559	1,233,540	함산초등학교
3	가야곡면 목곡리	508-1	학교용지	토지	1,015	60,900	"
4	가야곡면 목곡리	508-2	임야	토지	720	43,200	"
5	가야곡면 왕암리	372	학교용지	토지	5,342	267,100	왕암초등학교
6	가야곡면 왕암리	370	학교용지	토지	5,329	266,450	"
7	가야곡면 왕암리	367-2	구거	토지	1,427	71,350	"
8	노성면 호암리	312	학교용지	토지	14,208	781,440	호암초등학교
9	부적면 탑정리	256-3	학교용지	토지	7,854	510,510	부적 부남분교장
10	부적면 탑정리	256-20	학교용지	토지	738	47,970	"

11	양촌면 산직리	566-2	학교용지	토지	8,912	516,896	양촌 장원분교장
12	양촌면 산직리	564-3	학교용지	토지	770	44,660	n,
13	양촌면 산직리	565-2	전	토지	532	30,856	n,
14	노성면 노티리	205-1	학교용지	토지	5,844	321,420	호암 삼동분교장
15	노성면 화곡리	315-3	학교용지	토지	1,226	67,430	"

■ 취득 대상 재산내역 : 건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 적	가감정 가격
	계				9,247.04	1,377,421
1	벌곡면 조동리 (벌곡 조동분교장)	113	교사동 1층	철근콘크리트조 / 스라브	353.25	63,585
	벌곡면 조동리	113	교사동 2층	철근콘크리트조 / 스라브	353.25	63,585
	벌곡면 조동리	113	사택 1층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61.50	9,840
	벌곡면 조동리	113	다목적실 1층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119.70	14,364
	벌곡면 조동리	113	도예실1층	철근콘크리트조 / 스라브	151.20	27,216
	벌곡면 조동리	113	샤워장1층	철근콘크리트조 / 스라브	48.00	8,640
	벌곡면 조동리	113	화장실2층	철근콘크리트조 / 스라브	48.00	8,640
	벌곡면 조동리	113	조리실1층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73.29	8,795
	소 계				1,208.19	204,665
2	가야곡면 산노리 (함산초등학교)	508-4 외2필지	교사동가	시멘트벽돌조/ 스레트	546.48	49,183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교사동나	시멘트벽돌조/ 스레트	174.60	15,714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교사동다	콘크리트조/ 스라브	178.20	32,076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33.06	5,290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창고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31.50	3,780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창고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45.90	5,508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샤워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34.65	4,158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급식실	시멘트벽돌조/ 강판	161.28	14,515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18.30	2,196
	가야곡면	산노리	508-4 외2필지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28.80	3,456
	소 :	계				1,252.77	135,876
3	가야곡면 (왕암초 년		370외 2필지	교사동 가	철근콘크리트조 / 스라브	603.90	108,702
	가야곡면	왕암리	370외 2필지	교사동 나 1층	철근콘크리트조	351.09	63,196
	가야곡면	왕암리	370외 2필지	교사동 나 2층	철근콘크리트조 / 스라브	349.29	62,872
	가야곡면	왕암리	370외 2필지	급식실	조립식/강판지붕	201.60	18,144
	가야곡면	왕암리	370외 2필지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40.32	7,258
	가야곡면	왕암리	370외 2필지	사택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65.07	11,713
	가야곡면	왕암리	370외 2필지	창고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30.94	3,713
	가야곡면	왕암리	370외 2필지	창고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26.40	3,168
	가야곡면	왕암리	370외 2필지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6.43	771
	소 :	계				1,675.04	279,537
4	노성면 (호암초 등	호암리 등학교)	312	교사동 1층	철근콘크리트조	846.35	152,343
	노성면	호암리	312	교사동 2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768.65	138,357
	노성면	호암리	312	급식실	조립식/강판지붕	260.64	23,458

	노성면 호암리	312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29.70	5,346
				스라브 시멘트벽돌조/		
	노성면 호암리	312	창고	스라브	22.68	2,721
	노성면 호암리	312	창고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16.20	1,944
	노성면 호암리	312	샤워장	조립식/강판지 붕	34.56	3,110
	노성면 호암리	312	사택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63.80	11,484
	노성면 호암리	312	차고	조립식각 파이프구조/ 조립식판넬지붕	48.00	4,320
	소 계				2,090.58	343,083
5	부적면 탑정리 (부적 부남분교장)	256-3 외 1필지	교사동가	시멘트벽돌조/ 스FP트	654.00	78,480
	부적면 탑정리	256-3 외 1필지	교사동나	콘크리트조/ 스라브	180.00	32,400
	부적면 탑정리	256-3 외 1필지	교사동다	시멘트벽돌조/ 골스레트	82.50	7,425
	부적면 탑정리	256-3 외 1필지	창고	벽돌조/스레트	52.20	4,176
	부적면 탑정리	256-3 외 1필지	숙직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33.00	5,280
	부적면 탑정리	256-3 외 1필지	창고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28.00	336
	부적면 탑정리	면 탑정리 256-3 외 1필지		시멘트벽돌조/ 스레트	18.10	2,172
	소 계				1,047.80	130,269
6	양촌면 산직리 (양촌 장원분교장)	566-2	학교	철근콘크리트조	545.30	98,154
	양촌면 산직리	566-2	창고	세멘벽돌/ 스라브	33.10	3,972
	양촌면 산직리	566-2	하역장	세멘벽돌/ 스라브	33.10	3,972
	양촌면 산직리	566-2	화장실	세멘벽돌/ 스라브	55.20	6,624
	양촌면 산직리	566-2	창고	세멘벽돌/	28.00	3,360
	양촌면 산직리	566-2	화장실	세멘벽돌/ 스라브	6.93	832
	소 계				701.63	116,914

7	노성면 화곡 (호암 삼동분 교	1 315-3	교실	세멘벽돌/ 스레트	247.50	22,275
	노성면 화곡	노성면 화곡리 315-3		세멘벽돌/ 스라브	178.20	26,730
	노성면 화곡	리 315-3	주택	세멘벽돌/ 스라브	33.00	5,940
	노성면 화곡	리 315-3	주택	세멘벽돌/ 스라브	33.00	5,940
	노성면 화곡	리 315-3	주택	세멘벽돌/ 스라브	26.40	4,752
	노성면 화곡	리 315-3	숙직실, 창고	세멘벽돌/ 골스레트	39.60	3,564
	노성면 화곡	리 315-3	변소	연와조/ 골스레트	19.80	1,980
	노성면 화곡	리 315-3 외1필지	교사동 가	시멘트벽돌조/ 스레트	447.40	53,688
	노성면 화곡	리 315-3 리 외1필지	창고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28.00	3,360
	노성면 화곡	리 315-3 리 외1필지	사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33.00	5,940
	노성면 화곡	리 315-3 리 외1필지	화장실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6.93	832
	노성면 화곡	315-3	교사동 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78.20	32,076
	소 계				1,271.03	167,077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우리지역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부재
- O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학업 스트레스 등의 현실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필요
- O 우리지역 성장동력 핵심사업인 문화·관광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폐교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개발 필요성 대두
- O 캠핑 등 체험 확산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 필요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7. 6월중 : 폐교 매입을 위한 MOU 체결(교육청)
- O 2017. 6월 ~ 7월: 1차매입 예산확보·폐교 매입(관련 실과소)
- O 2017. 7월 ~ 8월 :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관련 실과소)
- 2017. 8월: 폐교활용방안 용역추진(관련 실과소)
- O 2017. 12월중: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 MOU 체결
- O 2018. 1월 ~ 4월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및 국비확보
- 2018. 5월중: 논산시와 사회적기업간 운영관리 위탁 체결
- 2018. 5월 ~ 2019년 : 사업 착공 및 준공

□ 위치도

① 【벌곡면 조동리 113】 - 학교용지, 9,840 m²



② 【가야곡면 산노리 508-4】 - 학교용지, 20,559 m²



③ 【가야곡면 목곡리 508-1】 - 학교용지, 1,015 m²



④ 【가야곡면 목곡리 508-2】 - 임야, 720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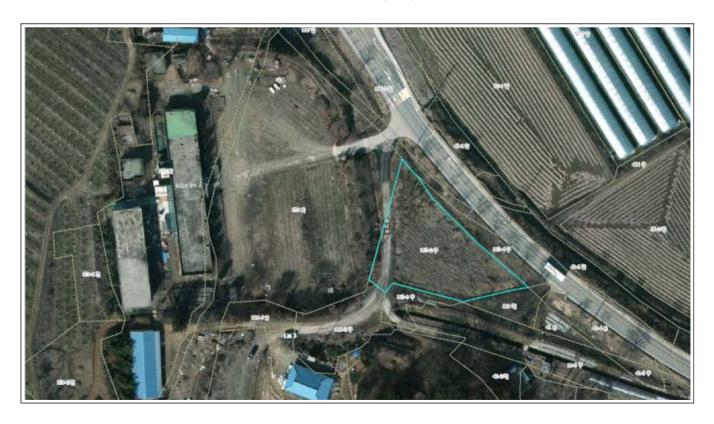
⑤ 【가야곡면 왕암리 372】 - 학교용지, 5,342 m²



⑥ 【가야곡면 왕암리 370】 - 학교용지, 5,329 m²



⑦ 【가야곡면 왕암리 367-2】 - 구거, 1,427 m²



⑧ 【노성면 호암리 312】 - 학교용지, 14,208 m²



⑨ 【부적면 탑정리 256-3】 - 학교용지, 7,854 m²



⑩ 【부적면 탑정리 256-20】 - 학교용지, 738 m²



① 【양촌면 산직리 **566-2**】 - 학교용지, **8,912**㎡



① 【양촌면 산직리 **564-3**】 - 학교용지, **770** m²



① 【양촌면 산직리 **565-2**】 - 전, **532**m²



① 【노성면 노티리 205-1】 - 학교용지, 5,844 m²



①5 【노성면 화곡리 315-3】 - 학교용지, 1,226 m²



2) 소나무 노을섬 일원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 사업개요

O 추진기간 : 2017년 6월 ~ 12월

O 위 치 :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일원

○ 소요예산 : 800,000천원

O 추진내용 : 탑정호 수상레포츠 유치, 수변데크 조성 등 수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탑정8경의 하나인 소나무 노을섬 일원 부지를

향후 소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매입 추진.

O 취득재산 대상내역 : 토지 및 건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구분	면적	대장가격 (시가표준액)	가감정가격	비고
	합계				7,363	10,544	764,104	
1	부적면 신풍리	747	임	토지	207	253	21,735	
2	부적면 신풍리	745	임	토지	91	54	8,827	
3	부적면 신풍리	744	임	토지	5,177	5,954	553,939	
4	부적면 신풍리	산44	임	토지	1,190	2,309	111,860	
5	부적면 신풍리	741	유	토지	166	469	16,268	
6	부적면 신풍리	738	유	토지	403	1,140	39,091	
7	부적면 신풍리	739	유	토지	129	365	12,384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탑정호 수상레포츠 유치, 수변데크 둘레길 등 우리시 역점사업인 수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탑정8경의 하나인 소나무 노을섬 일원에 소공원 및 주차장 등의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행정행위 추진에 필요한 토지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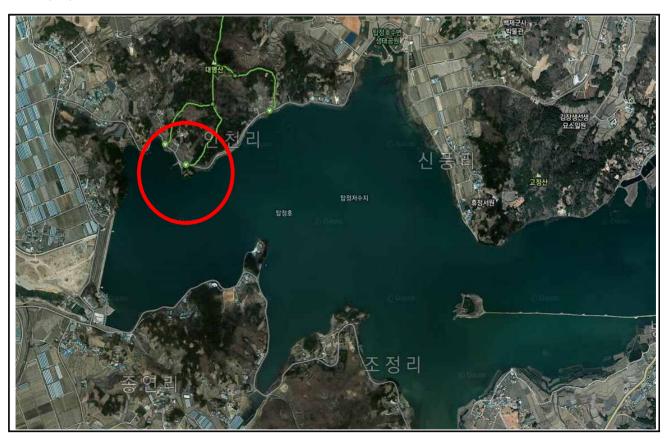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2017. 5월 : 취득 대상지 토지주 사전 협의 및 공유재산 심의회

○ 2017. 6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토지매입비 예산반영(2회 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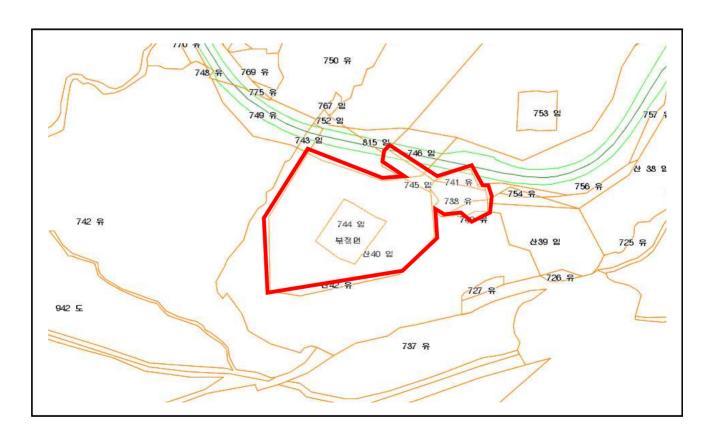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취득 추진(예산반영 후)

□ 위치도



□ 지적도





3) 탑정호 수변개발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 사업개요

O 추진기간 : 2017년 6월 ~ 12월

O 위 치 :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일원

○ 소요예산 : 3,730,000천원

○ 추진내용 :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향후 관광

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매입.

O 취득재산 대상내역 : 토지 및 건물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구분	면적	대장가격 (시가표준액)	가감정가격	비고
	합계				25,567	378,237	3,730,000	
1	가야곡면 조정리	541-2	임	토지	9,365	38,022	931,420	
2	가야곡면 조정리	541-3	임	토지	5,161	24,205	918,980	
3	가야곡면 종연리	167-3	임	토지	2,009	7,915	401,800	
4	가야곡면 종연리	167-6	임	토지	4,877	15,997	516,716	
5	가야곡면 종연리	167-9	임	토지	1,643	6,276	318,600	
6	가야곡면 종연리	167-10	임	토지	1,134	5,352	73,710	
7	가야곡면 종연리	175-1	임	토지	454	77,589	204,300	
8	가야곡면 종연리	175-2	임	토지	507	86,646	218,140	
9	가야곡면 종연리	산44-4	미	토지	198	28,235	26,334	
10	가야곡면 종연리	175-1번지 외 1필지	철근콘 크리트	건물	219	88,000	120,000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출렁다리, 수변데크 조성 등 수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관광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주차장, 소공원 등) 구축에 활용할 토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진입로 확장 등 향후 행정행위 추진에 필요한 토지 취득.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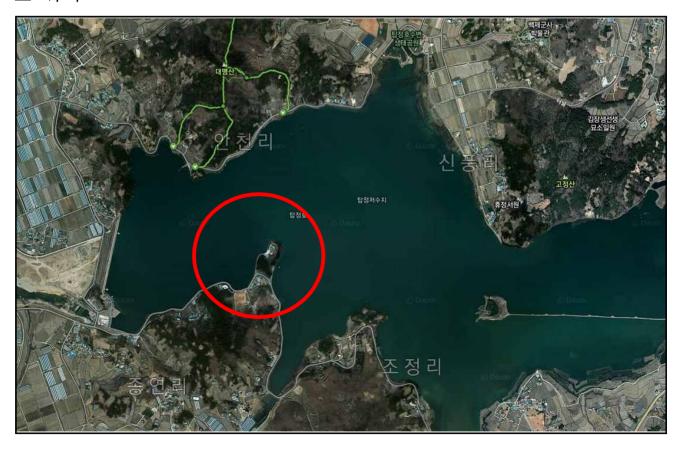
O 2017. 3월 ~ 4월 : 취득 대상지 토지주 사전 협의

○ 2017. 5월 :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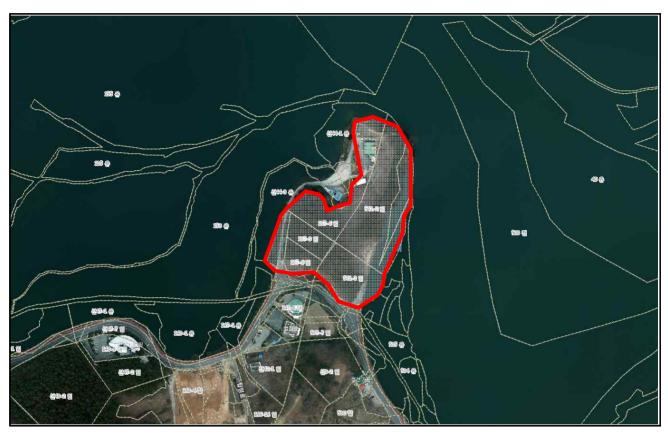
O 2017. 6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토지매입비 예산반영(2회 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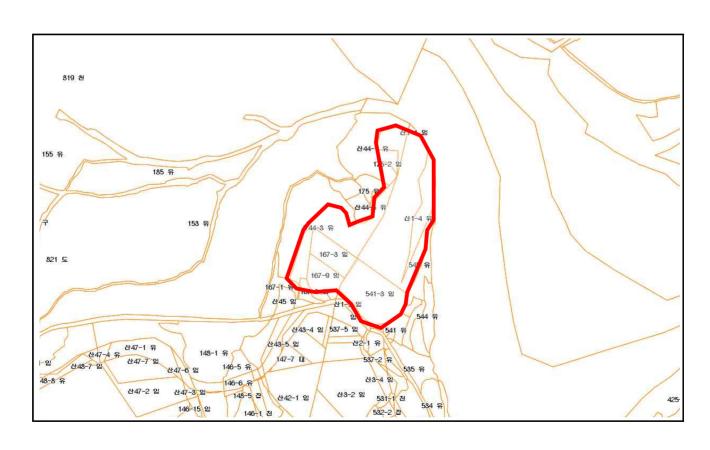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취득 추진(예산반영 후)

□ 위치도



□ 지적도





4)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건축

□ 취득개요

O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7년 9월

O 취득위치 : 논산시 관촉동 342번지 지내 / 족구장

O 취득면적: 전천후 구장 1동(1,207m² / 366평)

O 사 업 비 : 1,400,000천원 <시비100%>

O 주요기능 : 족구, 배드민턴 등 전천후 이용가능한 스포츠 활동 장소 제공

O 취득재산 대상내역 : 전천후 구장1동 (신축 취득)

(단위:m²/천원)

일련	재 산 포	도 시		~ -l_l -l	취득	21 T V A	w =
번호	소 재 지	구분	면적 (m²)	추정가격	시기	취득사유	비고
1	관촉동 342번지 지내	시설물	1,207	1,400,000 (예상금액)	2017	전천후 구장 신축 취득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O 그동안 양 단체 회원들의 지속적인 실내구장 조성 요구
 - → 운동의 특성상 실내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 O 최근 전천후 육상 경기장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실버배드민턴 회원들의 대안장소 요구 입지 확연
 - → 실버 배드민턴 회원들이 전천후 육상경기장에서 최근까지 운동을 하였으나 대안없이 내몰린다는 위기감 조성
- O '17. 5. 1.(월) 시장님 면담시 금년중 건축지원 약속
 - → 공설운동장 족구장부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실버배드민턴 회원과 병행사용
 - → 금번 2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기에 완공 추진 지시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7. 5월 : 공유재산 취득·심의 등 관련절차(중기계획)등 반영·이행

O 2017. 6월: 2회 추경 반영 및 확보

○ 2017. 6월 ~ 7월 : 설계용역 발주 및 용역 완료

○ 2017. 7월: 설계이후 건축부분(3억원 이상) 일상감사 의뢰

O 2017. 7월 ~ 9월 : 공사착공 및 공사 준공

□ 위치도



□ 현황사진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1) 하수처리장 부지 처분(매각)
- □ 처분개요

○ 매각위치 : 광석면 오강리 419-1번지

O 매각면적 : 2,247m²(토지매각)

○ 처분목적 : 당초 『광석면 신당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편입 토지로서 하수처리장 부지로 예정되어 협의 취득하였으나 민원 발생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보존이 부적합한 일반재산을 매각 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O 처분재산 대상내역 : 토지

(단위: m², 천원)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구분	면적	대장가격	감정가격	비고
1	광석면 오강리	419-1	답	토지	2,247	30,335	57,298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광석면 오강리 419-1번지는 당초 『광석면 신당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편입 토지로서 하수처리장 부지로 예정되어 2015. 6. 2일 협의 취득하였으나 민원 발생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됨(광석면 신당리 691번지)에 따라 현재는 미활용 상태임.
-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의 용도로 매입한 토지로서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의하면 해당 사업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나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해당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O 2016년 6월 : 오강리 주민설명회 중 처리장 반대 의견 제시(플래카드 설치 등)
- 2016년 6월 : 오강리 이장의 처리장 위치 변경 민원 제출(오강리 419-1 → 신당리 691)
- 2016년 6월 : 처리장 이전 민원사항 보고
- 2016년 7월 : 처리장 변경 및 하수관로 변경 노선 검토

O 2016년 8월 : 설치 인가(변경) 신청(충남도)

○ 2017년 3월 : 설치 인가(변경) 완료

O 2017년 5월 : 감정평가 완료

○ 2017년 6월 ~ 8월 : 매각 입찰 공고 및 매각 완료

□ 위치도



□ 현황사진



4. 관련법규

- O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O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O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워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 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 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 일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 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